

사단법인 한국천문학회 정관 및 규정

정관	77
학회 운영 규정	83
임원선출 규정	85
위원회 및 분과 규정	87
윤리 규정	89
기부금 규정	99
학회 운영 세칙	100
선거관리 세칙	102
위원회 및 분과 세칙	104
소남천문학사 연구소 규정	131

사단법인 한국천문학회 정관

1999년 12월 03일 제정
2014년 10월 16일 개정
2014년 12월 18일 개정
2020년 11월 25일 개정
2021년 12월 09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문학의 발전과 그 응용·보급에 기여하고 나아가 과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라 하고, 영어명칭은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줄여서 KAS)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 한국천문연구원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 분소를 둔다<개정 '14.10.16.>.

제4조 (사업)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적 회합의 개최
2. 학술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3.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4. 학술의 국제교류
5.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 일부를 수혜자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근무처·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2장 회원

제6조 (구분 및 자격) 학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천문학에 관심이 있는 개인으로서 대학에서 천문학 또는 그에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개정 '21. 12. 09.)
2. 준회원: 준회원은 대학의 학부생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천문학 발전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학회의 목적달성에 큰 공적이 있는 자로서 정회원의 권리를 부여한다.
4.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학회에 창조 및 기부행위를 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동등한 기여를 하였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개인 또는 단체
5.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기관
6. 교육회원: 교육회원은 천문학과 관련된 교육 및 대중화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개정 '21. 12. 09.)

제7조 (입회)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회된다.

1. 학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존 정회원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2인의 추천과 학회가 정한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가 승인되며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 가.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 나.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 다. 10년간 학회의 정회원으로 있었던 자
 - 라. 기타 이사회가 인정한 자
2. 학회의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존 정회원 중 전호의 가목에서 라목에 해당하는 자 1인의 추천과 학회가 정한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가 승인되며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3. 명예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4.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 및 교육회원은 이사 2인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1. 12. 09.)

제8조 (의무와 권리)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정관 및 의결 사항의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연구발표 및 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4. 준회원은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권한정지) ① 학회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학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나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권한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이사 2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개정 '14.10.16.>
4.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회장과 감사 2인, 그리고 이사의 과반수이상은 임원선출 규정에 따라 정회원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회장과 이사의 일부는 회장이 지명한다.<개정 '14.10.16., '14.12.18, '20. 11.25>

②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

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회장 직무대행자) ① 회장이 사고가 생겼을 때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시정치 않을 때는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 그리고 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개정 '14.10.16., '14.12.18.>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국내에 있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자간 쌍방향 원격통신을 이용한 비대면 참석자 및 위임장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 11.25.>

② 총회의 의사결정은 출석하여 표결권을 가진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20. 11.25.>

제19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국내에 있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국내에 있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 (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은 본인이 관련된 총회 의결 안건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14.10.16.>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차기회장 및 감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삽입 '14.10.16.>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자간 쌍방향 원격통신을 이용한 비대면 참석자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 11.25.>

②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 진행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삭제.<'14.10.16.>

제23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토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5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 (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이 중 기부금의 연간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 11.25.>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사업 수익금
4. 기부금
5. 기타 수익금

제27조 (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 (세입, 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감독관청에 제출한다.

제29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학회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0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국내에 있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학회가 해산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증한다.

제32조 (정관 개정)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시행 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일부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14.10.16.>

제34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인의 명칭 변경
2. 학회의 해산

제35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학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현 직	임 기
회장	이 우 백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1998.4-2000.4
부회장	김 철 희	전북대학교 교수	1998.4-2000.4
이사	강 영 운	세종대학교 교수	1998.4-2000.4
이사	강 용 희	경북대학교 교수	1998.4-2000.4
이사	김 두 환	아주대학교 연구원	1998.4-2000.4
이사	이 명 균	서울대학교 교수	1998.4-2000.4
이사	이 형 목	서울대학교 교수	1998.4-2000.4
이사	최 규 흥	연세대학교 교수	1998.4-2000.4
이사	한 원 용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원	1998.4-2000.4
이사	김 용 하	충남대학교 교수	1999.4-2001.4
이사	안 흥 배	부산대학교 교수	1999.4-2001.4
이사	이 상 각	서울대학교 교수	1999.4-2001.4
이사	이 영 옥	연세대학교 교수	1999.4-2001.4
이사	이 용 삼	충북대학교 교수	1999.4-2001.4
이사	장 경 애	청주대학교 교수	1999.4-2001.4
감사	김 정 흠	선문대학교 교수	1998.4-2000.4
감사	민 영 기	경희대학교 교수	1998.4-2000.4

1999년 12월 3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 2000년 02월 08일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2. 2014년 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허가
3. 2020년 11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허가
4. 2021년 12월 0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허가

한국천문학회 학회운영 규정

2014년 10월 16일 제정
 2018년 04월 12일 개정
 2018년 06월 05일 개정
 2018년 09월 11일 개정
 2019년 01월 23일 개정
 2020년 10월 15일 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33조에 따라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회장단

제2조 (회장단) 학회의 능률적인 업무집행을 위하여 회장단을 둔다.

제3조 (구성)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로 구성한다.

제2장 회비

제4조 (회비) ① 학회 회원의 연회비와 입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 50만원
2. 부회장 : 30만원
3. 이사 : 15만원
4. 정회원(일반) : 7만원
5. 정회원(학생) : 3만원
6. 준회원 : 3만원
7. 입회비 : 1만원
8. 분과회비 : 분과에서 정함

② 만 60세 이상 정회원의 경우 요청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연회비 면제 의결

제5조 (회비의 책정) 회장은 학회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회비 변경에 관한 안을 이사회 동의를 얻어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회비납부의 해태) ①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회장은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정관 제9조에 의거하여 회원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단 해당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는 그 즉시 회원자격을 회복한다.

② 회원의 권리 중 선거권은 당해년도 포함 최근 2년간, 정회원 회비 납부를 포함한, 정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주어진다. 단 선거권 부여 시 소급해서 납부한 회비는 고려되지 않는다.

③ 1년 이상 유학 및 파견 등의 이유로 국외 장기 거주 경우, 연회비 면제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승인한다.

제3장 부설기관

제7조 (부설기관 설치) ① 학회의 목적에 부합한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신설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③ 학회에 있는 부설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남천문학사연구소

제8조 (부설기관 규정) 정관 제33조에 따라 부설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9조 (부설기관 운영) 부설기관 운영은 부설기관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부설기관 재정 및 회계) ① 부설기관의 자산과 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② 부설기관의 회계는 학회의 부설기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1조 (부설기관 해산) ① 부설기관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설기관이 해산될 때 자산 처리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용역사업

제12조 (용역사업 수행) 학회는 학회발전을 위해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13조 (시행 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규정 개폐)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한국천문학회 임원선출 규정

2014년 10월 16일 제정
 2017년 01월 11일 개정
 2018년 06월 05일 개정
 2018년 09월 11일 개정
 2019년 04월 10일 개정
 2020년 10월 15일 개정
 2021년 10월 14일 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12조에 따라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임원선출

제2조 (회장선출) ① 회장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차기 회장은 현 회장 임기 2차년도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선출한다.

제3조 (부회장선출)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4조 (이사선출) ① 이사는 매년 6명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신임 회장은 임기 첫해에 이사 3명을 지명한다.

제5조 (감사선출) 감사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제6조 (당연직 이사) 부회장, 총무, 재무, 천문학회지 및 천문학논총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올림피아드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7조 (선거 관리) 임원선출에 필요한 선거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은 별도의 선거관리 세칙에 따른다.

제2장 임원후보

제8조 (회장후보) ① 차기 회장후보는 정회원 각자로부터 추천 또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며, 또 학회의 발전과 운영방향에 관한 공약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정회원 15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 가운데 상위 추천자 2명을 차기 회장후보로 한다.
 ④ 제③항을 충족하는 차기 회장후보가 1명이거나 없을 때,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 이내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후보) ① 이사는 정회원 1인당 2명의 추천을 받아 상위추천자 8명을 차기 이사후보자로 한다.
 ② 동수 추천으로 인해 이사후보가 8명을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위 동수 추천자들 중에서 최종후보를 선정한다.

제10조 (감사후보)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 이내의 차기 감사후보를 추천한다.

제3장 후보자격

제11조 (회장후보 자격) 회장 후보는 전년도 말까지 10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회원 가운데 2년 이상 이사(사단법인화 이전 평의원 포함)로 봉사한 회원이어야 한다.

제12조 (이사후보 자격) ①이사 후보는 전년도 말까지 2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회원이어야 한다.

② 임기가 남은 이사(지명직과 당연직 포함)의 경우 이사회후보가 될 수 없다.

제13조 (감사후보 자격) 감사 후보는 회장을 역임한 회원 또는 인격과 덕망을 갖춘 인사이어야 한다.

제4장 기타

제14조 (시행 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규정 개폐)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한국천문학회 위원회 및 분과 규정

2014년 08월 21일 제정

2016년 03월 31일 개정

2019년 04월 10일 개정

2019년 11월 26일 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33조에 따라 위원회 및 분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위원회

제2조 (위원회) ① 학회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를 둔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관련 상설 및 비상설위원회를 신설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③ 학회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설위원회

가. 한국천문학회지(JKAS) 편집위원회

나. 천문학논총(PKAS) 편집위원회

다. 교육 및 홍보위원회

라. 포상위원회

마. 한국천문올림피아드 위원회

바. 한국 IAU운영위원회

시. 학술위원회

아. 한국천문학회 발전위원회

2. 비상설위원회

가. 용어심의위원회

나. 우주관측위원회

다. 연구윤리위원회

라. 규정개정위원회

마. 선거관리위원회

④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학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상설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비상설위원회) ① 위원회 활동기간은 회장으로부터 주어진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 관련 임무가 추가 발생한 경우 회장은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을 새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비상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정관 제33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 (특별위원회) ① 학회의 한시적인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세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제2장 분과

제7조 (분과) ① 학회에 전문분야별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분과를 둔다.

- ② 분과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신설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 ③ 학회의 분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태양우주환경분과
 - 2. 우주전파분과
 - 3. 광학천문분과
 - 4. 행성계과학분과
 - 5. 젊은 천문학자 모임
 - 6. 여성분과
 - 7. 한림회
 - 8. 천문관측기기분과

제8조 (분과 운영) ① 분과 운영은 분과 세칙에 따른다.

- ② 분과는 1인의 분과 위원장과 약간의 분과 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분과 위원장과 분과 운영위원의 선출은 분과 세칙에 따른다.

제9조 (분과 위원장의 임무) 분과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1. 소속회원의 동향
- 2. 분과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제10조 (분과 가입 및 재정) ① 학회 회원은 1개 이상의 분과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분과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회재정에서 연간 50만원을 지원한다.

제3장 기타

제11조 (시행 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세칙 또는 분과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규정 개폐)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1. 2014년 08월 21일 이사회 승인
- 2. 2016년 03월 31일 이사회 승인
- 3. 2019년 11월 26일 이사회 승인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한국천문학회 윤리 규정

2014년 8월 21일 제정

2020년 9월 1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이 규정은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33조, 그리고 위원회 및 분과규정 제2조와 제5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과 연구윤리 및 도덕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 및 도덕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및 도덕 윤리위반행위(이하 윤리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윤리위반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 ① 학회 회원은 아래의 윤리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학회의 목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전문학 활동을 함에 있어, 진실된 연구활동을 하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자유로운 연구 풍토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
2. 제3조에서 정의하는 연구윤리위반행위를 지양할 의무
3. 제4조에서 정의하는 도덕윤리위반행위를 지양할 의무
4.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윤리 규범을 준수할 의무

② 특히 지도교수, 연구책임자 등 책임자 위치의 회원은 책임 대상 회원들의 교육, 연구, 전문성 고취를 위해 아래의 윤리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인권침해, 차별, 성희롱/성폭력, 괴롭힘/따돌림이 없는 안전한 연구 환경을 제공할 의무
2.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 및 연구 결과 기여에 대한 인정의 의무
3.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상호 존중 및 보호의 의무
4. 책임 대상 회원들의 학문적 경력 발전을 적시에 장려할 의무

제3조 (연구윤리위반행위정의) 연구윤리위반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한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에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위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학계 또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제4조 (도덕윤리위반행위정의) 도덕윤리위반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한 인권침해, 차별, 성희롱/성폭력, 괴롭힘/따돌림 등 회원에 대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말한다.

1. “인권 침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

나. 헌법 제10조 - 제22조에서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다. 기타 위의 각 목에 준하는 행위

2.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현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의 이유로 상대방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가 목에 열거된 이유로 타인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괴롭히거나, 강요하는 행위

다. 기타 위의 각 목에 준하는 행위

3. “성희롱/성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타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회원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졸업, 고용, 승진, 처우 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마. 기타 위의 각 목에 준하는 행위

4. “괴롭힘/따돌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교육, 연구 및 업무 환경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교육, 연구 및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교육, 연구 및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개인이나 집단이 개인을 비하, 위협, 모욕, 방해, 따돌리는 등의 불합리한 행위

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언어적, 신체적 괴롭힘/따돌림을 포함

마. 기타 위의 각 목에 준하는 행위

제5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 및 도덕 윤리 확립과 윤리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7조 (소속) 위원회는 학회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당연직 위원과 4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1인, 천문학회지 편집위원장, 천문학논총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여성분과위원장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부회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총무)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은 추천직 위원 중 1인을 총무로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 및 도덕 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윤리위반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윤리위반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이 제안한 토의 사항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회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윤리위반행위 조사

제15조 (윤리위반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학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윤리위반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을 통해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부정행위 및 위반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제21조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6조 (제보자, 피해자, 피조사자,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정의)
① “제보자”라 함은 윤리위반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피해자”라 함은 윤리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윤리위반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윤리위반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윤리위반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윤리위반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 피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17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제보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열어 연구윤리위반행위인지 도덕윤리위반행위인지를 판정한 후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조사위원장을 정하여 예비조사를 진행한다. 연구윤리위반 예비조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위원 중 천문학회지 편집위원장, 천문학논총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 도덕윤리위반 예비조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위원 중 여성분과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1인의 외부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연구윤리위반행위는 30일 이내, 도덕

윤리위반행위는 6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 또는 제4조의 윤리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18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회장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② 윤리위반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윤리위반행위 혐의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9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회장의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연구윤리위반행위는 90일 이내, 도덕윤리위반행위는 12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윤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2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제22조의 제척사항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④ 본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 및 피해자에게 위원회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 및 피해자가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20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조사 장소는 본조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 (제보자, 피해자,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나 피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제보자나 피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보자가 윤리위반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③ 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2조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 피해자 및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23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해자,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제24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본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윤리위반행위 혐의
3. 해당 윤리위반행위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해자,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위원 명단

제25조 (판정) 본조사위원회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 피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26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윤리위원회는 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연구윤리위반행위
2. 도덕윤리위반행위
3.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윤리위반행위 또는 도덕윤리위반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또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피해자·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28조 (시행 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 (규정 개폐)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201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Regulations on Research Ethics

Legislated on August 21, 2014

Article 1 Purpose

- ① These regulations are intended to provide a fair procedural framework for administering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hereinafter "the Committee") and ethical guidelines for researchers in carrying out their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hereinafter "the Society"), and Articles 2 and 5 of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and its sub-regulations.
- ② These regulations aim to establish ethical research practices for researchers. They also aim to prevent research misconduct, and to verify integrity upon occurrence of research misconduct in an impartial and systematic manner.

Article 2 Definition of Terms

- ① Research miscondu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isconduct") refers to any instance of fabrication, falsification, plagiarism, failure to give proper credit to co-authors, or redundant publication that may emerge during the research process including proposal, performance, reporting, and presentation of research defined by each item below. However, if such an instance arises from a minor mistake, or from differences in interpreting or judging data or research results, such an instance is not considered as misconduct.
 1. "Fabrication" refers to the act of presenting non-existent data or research results.
 2. "Falsification" refers to the act of artificially fabricating research materials, equipment, and processes, or distorting research content or results by arbitrarily altering and deleting data.
 3. "Plagiarism" refers to the act of using others' ideas, research content, or results without obtaining proper approval from the authors or without appropriate remarks or citation.
 4. "Failing to give proper credit to co-authors" refers to the act of failing to list those who contributed scientifically/academically to the research process or results as co-authors without justifiable reason, or conversely to the act of listing those who have not made any scientific/academic contribution as co-authors out of appreciation or respect.
 5. "Redundant publication" refers to the act of publishing a paper that is identical or highly similar in text to one that has already been published without due approval or citation.
 6. The act of suggesting to, coercing, or threatening another person to commit the acts described from 1 to 4 above.
 7. All other acts that go drastically beyond the typically permissible scope within the academic 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munity.
- ② "Informer" refers to a person who informs the respective research institute or the research support institute of the facts or related evidence of suspected misconduct.
- ③ "Examinee" refers to a person who becomes a subject of an investigation for misconduct upon information by an informer or discovery by the research institute, or a person who becomes a subject of an investigation for being presumed to be involved in misconduct during an investigation process, exclusive of testifiers and witnesses.
- ④ "Preliminary investigation" refers to procedures require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an official investigation of suspected misconduct is necessary.
- ⑤ "Main investigation" refers to a process to determine if suspected misconduct indeed took place.
- ⑥ "Judgment" refers to procedures to finalize investigation results and to inform the informer and examinee of the final investigation results in writing.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These regulations are applied to persons who ar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associated with research activities performed by (a) member(s) of the Society.

Article 4 Relation to Other Regulations

Unless there are special regulations in place with regard to establishment of research ethics and to verification of research integrity, all relevant matters shall be handled based on these regulations.

Chapter 1 Operation of Research Ethics Committee

Article 5 Affiliation

Th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as a non-permanent committee within the Society.

Article 6 Composition

- ① The Committee will consist of four ex officio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and three members on recommendation.
- ② The four ex officio members are the Vice President of the Society, JKAS editor-in-chief, PKAS editor-in-chief,

and the chairperson of the meeting organizing committee, respectively recommended by the President of the Society, as specified in Clause ① of Article 19. The three committee members on recommendation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of the Society.

③ The Vice President of the Society shall chair the Committee.

④ The Committee may establish a special sub-committee to investigate a specific case.

Article 7 Chairperson

① The chairperson shall represent the Committee and preside over meetings.

② When the chairperson cannot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unavoidable reasons, a member pre-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shall assume and perform the chairperson's duties on the chairperson's behalf.

Article 8 Term of Membership

The term of members shall be limited to the period during which time the Committee is in operation.

Article 9 Assistant Administrator, etc.

① The Committee may have one assistant administrator to facilitate the Committee's tasks.

② The Committee may have special members dedicated to supporting various Committee tasks.

Article 10 Tasks

The 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and determine each of the following matters:

1. Matters related to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ystems for research ethics;
2. Matters related to receiving and handling information on misconduct;
3. Matters related to launch of preliminary and main investigations, and approval of investigation results;
4. Matters related to protection of informer and measures to restore honor of examinees;
5. Matters related to handling of research ethics verification results and follow-up measures; and
6. Other matters presented by the chairperson for consideration.

Article 11 Meeting

① The chairperson shall convene and preside over the meeting.

② Items on the agenda shall be deemed resolved when two-thirds of members in attendance vote in agreement.

③ The chairperson may substitute the resolution of items on the agenda that are recognized as minor with a written resolution.

④ Non-members of the Committee can be present at the meeting to voice their opinions to the Committee members, when such participation is deemed necessary by the Committee.

Article 12 Expenses

Expenses necessary for the Committee's operation can be funded within the budget of the Society.

Chapter 2 Verification of Research Integrity

Article 13 Information and Receipt of Misconduct

① An informer may, in principle, inform the Society of alleged misconduct via all possible mea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oral and written statements, telephone calls, and email. However, should the informer wish to make an anonymous report, he or she shall submit the title of the research project or the title of the thesis, as well as the details and evidence of the alleged misconduct via letter or email.

② Any informer who falsely reports misconduct knowingly or who reports misconduct despite being able to determine it as false shall not be a subject for protection.

Article 14 Period and Method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①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hall begin within 15 days from the receipt of allegation and shall be completed within 30 days from the launch for approval by the President of the Society.

②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hall examine each of the following items:

1. Whether or not the alleged case falls under misconduct as described in Article 2 ①;
2. If the allegation details have validity and clarity, and thus will warrant a main investigation and bring about actual benefits;
3. Whether or not five year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f the initial report of the alleged misconduct.

Article 15 Report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Results

① Results o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hall be notified in written form to the President of the Society and the informer within 10 days from the Committee's resolution. However, in cases where the informer chooses to

remain anonymous, the above provision shall not apply.

- ② A report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results shall contain each of the following items:
1. Specific details of the report and personal information of the informer;
 2. Details of alleged misconduct and related research project subject to investigation;
 3. Whether or not a main investigation shall take place and grounds for determination; and
 4. Other relevant evidence.

Article 16 Launch and Duration of Main Investigation

- ① The main investigation shall begin within 30 days after the Society President approves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results.
- ② The main investigation, including judgment, shall be complet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it was launched.
- ③ If the Committee decides that it cannot complete the investigation within the period stipulated in ②, it shall explain the reason to the Society President and request extension of the investigation period.
- ④ Prior to the launch of the main investigation, a list of the Committee members should be notified to the informer, and if the informer makes a justifiable objection for avoidance of any Committee member, it shall be accepted.

Article 17 Request for Attendance and Material Submission

- ① The Committee may request the informer, examinee, witness(es), and testifier(s) to attend the investigation.
- ② The Committee may request the examinee to submit materials and may take measures to preserve evidence such as restriction of access by the persons involved in misconduct to the laboratory, and seizure and retention, etc. of relevant research materials after obtaining approval of the head of the respective research institute.
- ③ The examinee, upon receipt of requests for attendance and material submission stated in ① and ②, must comply with the requests.

Article 18 Protection of Rights and Confidentiality of Informer and Examiner

- ① In any case, the identity of the informer shall not b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exposed, and the name of the informer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investigation report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informer unless such inclusion is absolutely necessary.
- ② In the event that the informer faces any disadvantage such as a disciplinary action, discrimination in terms of work conditions, unjust pressure or harm as a result of his or her report of alleged misconduct, the Committee shall recover the damage or take measures needed by the informer.
- ③ The Committee shall take caution not to violate, discredit, or damage the honor or rights of the examinee, and make efforts to restore the honor of an examinee for whom suspicions have been cleared.
- ④ All matter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formation (report), examination, deliberation, and resolution shall be kept confidential. Those who ar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shall not disclose any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and while performing their respective dutie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However, if it is necessary to disclose any information for a justifiable reason, it can be disclosed following the Committee's resolution.

Article 19 Exclusion/Avoidance and Evasion

- ① If a Committee member has direct interest in an item on the agenda, the member shall be excluded from dealing with the item concerned.
- ② The Committee can determine such exclusion either on its authority or upon a request from the member concerned.
- ③ If there are just reasons to believe that a Committee member is unable to maintain fairness in performing his or her duty, the informer and examinee can make a request for avoidance.
- ④ A Committee member can evade his or her duty upon approval from the Committee chairperson for reasons stated in ① and ③.

Article 20 Guarantee of Objection and Defense Right

The Committee shall guarantee the informer and the examinee equal rights and opportunities to state opinions, to make an objection, and to defend himself or herself.

Article 21 Submission of Report on Main Investigation Results

- ① The Committee shall prepare a report on the main investigation resul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nal Report") based on opinions stated, objections raised, defenses, etc., and submit it to the Society's President.
- ② The Final Report shall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1. Details of initial information of alleged misconduct;
 2. Alleged misconduct and related research project subject to investigation;
 3. Roles of the examinee in the research project and whether or not the suspected action is true;
 4. Relevant evidence and witnesses;
 5. Details of objection or defense of the informer and the examinee in response to the investigation results and disposition thereof; and
 6. List of Committee members

Article 22 Judgment

The Committee shall finalize the investigation details and results based on the objection(s) raised and defense after obtaining an approval from the Society President, and notify the informer and examinee of its judgment.

Chapter 3 Action after Verification

Article 23 Action on Results

- ① The Committee may recommend to the Society Presiden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persons who have committed any of the following acts.
 1. Misconduct;
 2. Deliberate interference with an investigation of one's misconduct or that of another person, or act to harm the informer.
- ② Matters pertaining to disciplinary action may be determined separately.

Article 24 Preservation and Disclosure of Records

- ① Records of the preliminary and main investigations shall be kept by the Society for five years from the end of the investigation.
- ② The Final Report may be disclosed after the judgment is finalized, but the information related to identities, such as a list of all participants including the informer, Committee members, witnesses, testifiers, and those who provided consultation, may be excluded from such disclosure if the information is considered a threat to pose injury to those involved.

Chapter 4 Others

Article 25 Rules for Enforcement

The Committee may establish separate rules for the purpose of enforcing these regulations after obtaining an approval from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Society.

Article 26 Revisions and Abolition

The regulations may be modified or amended by a majority vote of the Board of Directors. Any modification or abolition shall be reported to the general assembly.

Addendum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ese regulations shall enter into force on August 21, 2014.

Article 2 Interim Measures

All actions implemented before these regulations have been established shall be deemed compliant with these regulations.

한국천문학회 기부금 규정

2018년 09월 11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천문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 정관 제26조에 의거 각종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부금의 종류) 1 기부금은 본 학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일반기부금 과 기탁자가 특정한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특별기부금으로 한다.

제3조 (기부금의 설정) 기부금의 설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기부금의 관리) 본 학회의 각종 기부금은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재무이사 책임 하에 관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과실의 사용) 본 학회가 관리하는 기부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을 목적사업에 사용 하고 그 잔액은 원칙적으로 기부금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실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한국천문학회 학회운영 세칙

2014년 08월 21일 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학회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학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회장단 업무

제2조 (회장) 회장은 회장단의 제반 업무를 지휘하고 총괄한다.

제3조 (총무이사) 총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단법인체 업무 및 직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총회, 이사회 등의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
3. 문서의 접수, 발송 통제 및 보존, 기타 문서(일지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서 및 학회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행사(편집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의 기획 및 진행 포함)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6. 사무원의 임용,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7. 물품 구매,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학회 일반사무 및 타 지명이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조 (재무이사) 재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 지출, 예산의 기획, 집행,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수입징수에 관한 사항
4. 회계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학회기금의 관리(은행이자 포함)와 예비비 관리에 관한 사항
6. 세무에 관한 사항

제2장 용역사업

제5조 (용역사업 수행) 학회의 용역사업 수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사업의 계약은 회장 명의로 하고 용역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의뢰자와 협의하여 회장이 선임 하되 필요한 경우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다.
2. 연구책임자는 연구진의 구성과 변경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용역사업 수행의 제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 (용역사업비) 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업비의 구성은 통상적인 정부기준 및 항목을 적용하며 간접비를 계상한다.
2. 사업비의 운용은 연구책임자가 관리하고 학회가 감독하되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간접비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의뢰자와 연구책임자, 학회가 협의하여 간접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기타

제7조 (내부 규정) 이 세칙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정이나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세칙 개폐) 이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세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한국천문학회 선거관리 세칙

2014년 08월 21일 제정
2017년 01월 11일 개정
2017년 12월 13일 개정
2020년 10월 15일 개정
2021년 09월 17일 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임원선출 규정 제14조에 따라 선거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선거 90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총무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내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한다
- ⑤ 위원회 총무는 총무이사로 한다.
- ⑥ 위원회 임무는 당선자를 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한다.
- ⑦ 관련자료 일체는 보관을 위해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선거 관리) ① 선거에 관한 공고, 히장및 이사 후보의 추천의리 및 등록, 선출을 위한 투·개표 및 당선자 공고, 기타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② 위원회는 총회 60일 전에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에게 선거를 공고하고, 접수된 예비 회장후보의 선거공약을 배포한다.
- ③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은 총회 30일 전까지예비후보 또는 자격을 갖춘 정회원 중에서 회장후보 1인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추천할 수 있다.
- ④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은 총회 30일 전까지 자격을 갖춘 정회원 중에서 이사후보 2인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추천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학회 임원선출규정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차기회장 후보와 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를 선거일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공지한다.
- ⑥ 선거일 10일 이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인명부 열람을 거쳐, 5일 이전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 온라인투표 시스템사로 송부한다.
- ⑦ 총회 일에 선거를 실시한다.
- ⑧ 선거 결과는 총회에서 공표한다.

제4조 (선거권) 선거명부 작성일 기준, 당해년도 포함 최근 2년간, 정회원 회비 납부를 포함한, 정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단 소급해서 납부한 회비는 선거권 부여시 고려하지 않는다.

제5조 (선거 방법) ① 회장 및 선출 이사는 정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를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6조 (당선자 확정 및 공고) ① 회장은 상위득표자로 한다.

- ② 투표에서 동수를 득표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회장으로 한다.
- ③ 이사는 상위 득표자 순으로 선출예정 인원전원을 선출한다.
- ④ 동수 득표로 인해 선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장단에서 확정한다.
- ⑤ 위원회는 당선자 선출 즉시 회원에게 보고 함으로써 당선자 확정공고를 대신한다.

제7조 (내부 규정) 이 세칙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정이나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세칙 개폐) 이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세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한국천문학회지 편집위원회 운영 세칙

2014년 08월 21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은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위원회 및 분과 규정 제11조에 따라, 한국천문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이하 JKAS)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1장 위원회

제2조 (활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천문학과 천체물리학 분야의 전문학술지인 JKAS 편집에 관한 사항
2. JKAS 특별호 편집에 관한 사항
3. JKAS에 대한 내부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논문 심사요건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5. 편집비용 및 논문 게재료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회원에게 통보 한다.
-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 -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내·외 과학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②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의 실무를 담당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6조 (회의소집)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7조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학술지 발간

제8조 (학술지) JKAS는 투고된 논문 수에 따라 매년 6회(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이상 발행한다.

제9조 (특별호) JKAS에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특별호의 편집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거나 '객원 편집위원(Guest Editor)'이 맡을 수 있다.

제3장 논문투고와 심사

제10조 (투고) 투고 논문의 양식과 투고 방법은 별도의 'JKAS 논문투고 내부규정'을 따른다.

제11조 (심사) 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JKAS 논문심사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4장 기타

제12조 (비용) ① 편집 및 심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당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② 비용 지급은 학회 사무과장이 한다.
- ③ 별도로 정하지 않은 비용의 발생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내부 규정) 위원회 세칙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정이나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세칙 개폐) 이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기타)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편집위원회 관련 사항은 위원회에서 다루며, 최종 결정권과 책임은 위원장에게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2014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세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천문학논총 편집위원회 운영 세칙

2012년 10월 17일 제정

2014년 08월 21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은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위원회 및 분과 규정 제11조에 따라, 천문학논총 (Publications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줄여서 PKAS)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14.08.21.>

제1장 위원회<삽입 '14.08.21.>

제2조 (활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천문학과 천체물리학 분야의 전문학술지인 천문학논총(이하 "논총") 편집에 관한 사항
2. 논총 특별호 편집에 관한 사항
3. 논총에 대한 내부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논문 심사요건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5. 편집비용 및 논문 게재료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회원에게 통보 한다.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내·외 과학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총무) ① 위원회에 총무 1인을 두며 총무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4.08.21.>

②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총무는 위원회의 제반 서무 및 회무를 담당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6조 (회의소집)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7조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장 학술지 발간<삽입 '14.08.21.>

제8조 (학술지) 논총은 투고된 논문 수에 따라 매년 2회 이상(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행한다.

제9조 (특별호) 논총에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특별호의 편집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거나 '객원 편집위원(Guest Editor)'이 맡을 수 있다.

제3장 논문투고와 심사<삽입 '14.08.21.>

제10조 (투고) 투고 논문의 양식과 투고 방법은 별도의 '천문학논총 논문투고 내부규정'과 '천문학논총 논문투고 지침'에 따른다.

제11조 (심사) 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천문학논총 논문심사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4장 기타<삽입 '14.08.21.>

제12조 (비용) ① 편집 및 심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당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비용 지급은 학회 사무과장이 한다.

③ 별도로 정하지 않은 비용의 발생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내부 규정) 위원회 세칙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정이나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4.08.21.>

제14조 (세칙 개폐) 이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14.08.21.>

제15조 (기타)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한 모든 편집위원회 관련 권한은 위원회에서 다루며, 최종 결정권과 책임은 위원장에게 있다.<개정 '14.08.2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2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 및 홍보위원회 운영 세칙

2014년 08월 21일 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위원회 및 분과 규정 제11조에 따라 교육 및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장과 총무의 역할) ① 위원장은 위원들을 회장에게 추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집 및 주재 등 제반 업무 총괄
2. 위원회 총무 선임
3. 학회 정기총회에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

② 총무는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회의록을 기록한다.

제3조 (업무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련된 사항 관장
2. 초·중·고학생의 천문교육, 대학생의 교육을 비롯한 천문과학관과 연계한 행사의 기획과 운영
3. 기타 회장이 위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업무

제4조 (내부 규정) 위원회 세칙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정이나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세칙 개폐) 이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세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포상위원회 운영 세칙

2012년 10월 17일 제정

2014년 08월 21일 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위원회 및 분과 규정 제11조에 따라 포상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08.21.>

제2조 (위원장과 총무의 역할) ① 위원장은 위원들을 회장에게 추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4.08.21.>

1.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주재 등 제반 업무 총괄
2. 위원회 총무 선임
3. 학회 정기총회에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

② 총무는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상후보자의 사전 선정과 업적조사 및 회의록을 기록한다.<개정 '14.08.21.>

제3조 (포상의 종류와 제정 취지) 학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종류와 제정 취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14.08.21.>

1. 학술상(Distinguished Scholar Award): 학회 회원들 중 지난 10 년간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학자에게 수여
2. 소남학술상(SohNam Award): 40세 이상의 중견 천문학자 중에서 학문적 업적과 대외활동을 통하여 한국 천문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남다른 기여한 회원에게 수여
3. 공로상(Distinguished Service Award):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 및 비회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수여
4. 젊은 천문학자상(Young Scholar Award):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40세 미만의 학회 회원에게 수여
5. 한국천문학회 우수논문상(JKAS Award): 한국천문학회에 수준 높은 학술논문을 게재한 회원에게 수여
6. 에스이랩-셋별상(SELab Rising-star Award): 한국천문학회지 및 학회 발전에 기여한 학생 회원들에게 수여
7. 메타스페이스-우수포스터상(METASPACE Best Poster Award): 학회 정기 학술대회 기간에 게시된 학술 포스터 중에서 우수한 연구결과를 창출한 회원에게 수여

제4조 (업무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학회에서 수여하는 각종 포상의 수상대상자 선정
2. 외부 기관에서 요청하는 각종 포상의 후보 선정 및 추천
3. 제3조에서 정한 포상에 대한 포상 기준의 제정 및 관리<개정 '14.08.21.>

제5조 (내부 규정) 위원회 세칙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정이나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4.08.21.>

제6조 (세칙 개폐) 이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14.08.2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2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포상기준

I. 한국천문학회 학술상

1. 배경과 목적
한국천문학회 회원들 중 지난 10년간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40세 이상의 학자에게 수여함.
2. 선정 기준
(가) 당해 년을 포함한 지난 10년간의 국제적 학술지 논문 발표 실적
(나) 지난 10년간의 JKAS와 PKAS 논문 발표 실적을 포함한 국내 학술활동 5년 이상
(다) 박사 학위자
(라) 수상 시점 국내거주자
3. 선정 절차
(가) 천문학회 회원들의 추천
(나) 포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상자 결정
4. 심의 자료 및 절차
(가) 당해 년을 포함한 지난 10년간의 국제적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한국천문학회 회원의 학술적 업적을 조사
(나) 학술지, 제1저자, 공동저자 별로 가중치를 정하여 지난 10년간 학술활동을 정량화하여 유자격자 선정. 단 JKAS 또는 PKAS에 프로시딩이 아닌 제1저자 논문 1편 이상 게재를 충족해야 함.
(다) 국외 학술활동(ADS 파악 SCI 논문 기준)이 우수한 회원으로 압축
(라) 주저자 논문의 인용회수 고려
5. 기타
(가) 2010년 4월 8일 제정
(나) 2015년 10월 1일 개정

II. 한국천문학회 공로상

2010년 4월 8일 제정

1. 목적
한국천문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 및 비회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하였음.
2. 수상자 선정
(가) 포상위원회는 퇴임하신 원로 회원을 공로상 수여 대상으로 추천
(나) 천문학회 회원은 천문학회 발전에 큰 공로를 세운 회원 및 비회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포상위원회에서 피추천인의 공적을 심의하여 추천여부를 결정
(다) 이사회는 포상위원회에서 추천된 공로상 후보의 공로상 수여 여부를 결정
3. 기타
공로상 수상자에게는 학술대회에서 공로패를 수여
4. 기타
(가) 2012년 10월 9일 개정
(나) 2015년 10월 1일 개정

III. 한국천문학회 젊은 천문학자상

1. 배경과 목적
한국천문학회 회원들 중 지난 3년간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40세 미만의 학자에게 수여함.
2. 선정 기준
 - (가) 당해 년을 포함한 지난 3년의 국제적 학술지 논문 발표 실적
 - (나) 당해 년을 포함한 지난 3년 동안 학회의 학술대회 발표실적
 - (다) 6월 30일 기준으로 40세 미만
 - (라) 국내 학술활동 2년 이상
 - (마) 석사 학위 이상
 - (바) 수상 시점 국내거주자
3. 선정 절차
 - (가) 천문학회 회원의 추천 또는 포상위원회 위원의 추천
 - (나) 포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상자 결정
4. 심의 자료 및 절차
 - (가) 심의활용 자료
 - ADS
 - JKAS, PKAS
 - 천문학회보
 - (나) 선정 절차
 - 당해 년을 포함한 지난 3년간 국제적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40세 미만 한국 천문학자의 학술업적 조사
 - 학술논문, 학술발표, 제1저자, 공동저자 별로 가중치를 정하여 당해 년을 포함한 지난 3년간 학술활동을 정량화하여 상위 10명 중 유자격자 선정
 - 상위 10명 중 국외 및 국내 학술활동(ADS 파악 심사저널 논문 기준)이 우수한 회원으로 압축
5. 기타
 - (가) 2007년 8월 제정
 - (나) 2010년 4월 8일 개정
 - (다) 2015년 10월 1일 개정

IV. 한국천문학회 소남학술상

1. 소남학술상 제정배경
고 소남 유경로 교수를 기리고자 유경로 교수의 유족들께서 천문학회에 기금을 기부하였으며, 이기금의 과실금으로 2년에 한 번씩 학문적 업적이 출중한 분에게 학술상을 수여하기로 하였음.
소남 학술상은 고 소남 유경로 교수의 작고 10주년이며 탄생 90주년이 되는 2007년부터 한국천문학회 정기 총회에서 수여함.
2. 소남학술상 수상자 선정 기준
원로 천문학자 중에서 학문적 업적과 대외활동을 통하여 한국 천문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남다르게 기여한 천문학회 회원에게 수여함
3. 소남학술상 재원 및 상금
재원: 고 유경로 교수 유족의 기부금
상금 200만원 및 상패
4. 선정 절차
 - (가) 천문학회 회원 전체와 포상위원의 추천을 받아 후보 선정
 - (나) 피 추천자에 대하여 포상위원회에서 학문적 업적 및 천문학계 기여도 등을 심의하여 수상자를 선정함

5. 기타

- (가) 2012년 10월 9일 개정
- (나) 2017년 9월 19일 개정

V. 한국천문학회 에סי랩-셋별상

1. 목적

학생 회원들이 JKAS(Journal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에 좋은 논문을 게재하여 JKAS 및 한국천문학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격려함.

2. 후원

(주) SELAB (대표: 오승준 회원)

3. 상금/상품

50만원

4. 후보 자격

국내 대학/대학원에 수학 중인 회원으로서 조사대상 기간(봄 학술대회: 전년도 7월-12월; 가을 학술대회: 당해 년도 1월-6월) 동안 JKAS에 논문을 게재한 회원

5. 선정 기준

- (가) 제1저자 여부
- (나) 논문의 수준
- (다) 논문의 피인용 가능성
- (라) 총 저자의 수 : 적을수록 우선
- (마) 쪽 수: 너무 짧은 논문은 배제
- (바) 재학 상태: 전일제 학생 우선

6. 선정 절차

포상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 선정함

7. 기타

2006년 봄 학회에서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셋별상으로 명칭 결정

VI. 한국천문학회 메타스페이스-우수포스터상

1. 목적

천문학회 정기 학술대회 기간에 게시된 학술 포스터 중에서 우수한 연구결과를 창출한 회원에게 시상함

2. 후원

(주) 메타 스페이스 (대표 : 박순창)

3. 상금

- (가) 우수 포스터 대상 25만 원
- (나) 우수 포스터 우수상 15만 원

4. 선정절차

- (가) 포상위원회와 학술위원회 위원들이 각 학문분야의 우수 포스터를 추천한다.
- (나) 추천된 수상 후보를 대상으로 포상위원회와 학술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토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 (다) (나)항의 포상위원회와 학술위원회의 연석회의는 포상위원장이 주관한다.

5. 기타

- (가) 2005년 10월 제정
- (나) 2011년 10월 개정
- (다) 2015년 10월 1일 개정

VII. 한국천문학회지(JKAS) 우수논문상

1. 배경과 목적

한국천문학회지(JKAS)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준 높은 학술논문을 유치하기 위해 우수논문상을 제정함.

2. 선정 기준

- (가) JKAS에 출판된 논문
- (나) 기준일로부터 4년 이내의 논문 중, 출판일로부터 3년 이내의 인용 회수
- (다) 논문인용회수가 최저치를 넘어야 함

3. 선정 절차

- (가) JKAS 편집위원회는 기준일(6월 30일)로부터 최근 4년 동안 JKAS에 발표된 모든 유형의 논문에 대해 출간일로부터 3년 이내의 인용 회수를 조사.
- (나) ADS 상에서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의한 인용 회수의 합계.
- (다) 포상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이 자료를 근거로 수상논문 선정.
- (라) 인용 수가 같은 경우, preprint 논문에 의한 인용회수, 인용논문 Impact factor의 총합, 가장 최근에 발표된 논문 등으로 순위를 정한다.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포상위원회에서 정한다.
- (마) 한 해에 두 편까지의 논문이 공동 수상할 수 있으며, 최소치를 넘는 논문이 없는 경우에는 수상 논문을 정하지 않는다. 동일 논문이 재수상 되지 않는다.
- (바) 저자 중에 한국천문학회 회원이 없는 논문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4. 포상

- (가) 한국천문학회 총회에서 수상논문을 발표하고 저자 대표에게 상금 수여. 교신저자는 저자들에게 연락해서 저자 대표를 정함.
- (나) JKAS 홈페이지에 해당 수상 논문을 영구 공지.

5. 상금결정방식

- (가) 포상위원회는 선정된 JKAS 우수논문(들)에 대해서 인용회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상금을 정한다.
- (나) 최소인용회수는 6회로 한다.
- (다) 편당 상금은 최대 150만원까지, 상금 총액은 연 최대 300만원까지로 한다.

6. 기타

- (가) 2012년 4월 5일 제정
- (나) 2015년 10월 1일 개정

VIII. 한국천문학회 각종 상의 국영문명칭

1. 한국천문학회 상

- (가) 학술상 : Distinguished Scholar Award
- (나) 공로상 : Distinguished Service Award
- (다) 젊은 천문학자상 : Young Scholar Award
- (라) 소남학술상 : SohNam Award
- (마) 에스이랩-셋별상 : SELab Rising-star Award
- (바) 메타스페이스-우수포스터상 : METASPACE Best Poster Award
- (사) 한국천문학회지(JKAS) 우수논문상 : JKAS Award

2. 기타

(가) 2014년 4월 10일 제정

(나) 2015년 10월 1일 개정

한국천문올림피아드 위원회 운영 세칙

2014년 08월 21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위원회 및 분과 규정 제11조에 따라 한국천문올림피아드 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과 천문올림피아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문올림피아드”라 함은 중·고교 수준의 천문분야의 학술경시대회로서 한국천문올림피아드(Korea Astronomy Olympiad: KAO)와 천문올림피아드 국제대회로 구분한다.
2. “교육”이라 함은 천문학 영재의 능력 향상 또는 국제대회 참가를 대비하는 것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합숙 교육하는 “계절학교”, 통신을 이용한 “통신교육”, 각 학생의 소속 학교 지도교사에 의한 “소속 학교 교육” 등을 포함한다.

제2장 위원회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의 위원회 및 분과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③ 위원은 학계, 교육계, 정부 및 관련단체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한국천문학회장
2. 한국천문연구원장
3. 감독관청 관련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4. 한국과학창의재단 관련 부서의 실장급 직원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한국천문올림피아드 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천문올림피아드 국제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4. 학생 교육 및 선발에 관한 사항
5. 천문올림피아드에 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결원된 위원의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내용 및 활동내역을 매년 학회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며 1개월 이내에 위원장을 새로 선임한다.

제7조 (소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4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장 기타

제9조 (운영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사무국) ① 위원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조사·연구의뢰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정책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이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학회는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천문올림피아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 이 세칙에 명시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내부 규정) 위원회 세칙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정이나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세칙 개폐) 이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세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한국 IAU운영위원회 운영 세칙

2014년 08월 21일 제정

2021년 10월 14일 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위원회 및 분과 규정 제11조에 따라 한국 IAU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장과 총무의 역할) ① 위원장은 국제천문연맹(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IAU)에서 한국을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들을 회장에게 추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을 대표하여 IAU 총회에 참석
2.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주재 등 제반 업무 총괄
3. 위원회 총무 선임
4. 학회 정기총회에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

③ 총무는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회의록을 기록한다.

제3조 (업무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 3년마다 개최되는 IAU 총회에 대한민국 국적의 신규 회원 가입신청서 제출
2. IAU가 주관하여 한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학술대회의 기획,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 매년 한국의 분담금을 IAU에 납부
4. 기타 회장이 위임한 IAU관련 업무

제4조 (교육대중화 코디네이터) IAU OAO(Office for Astronomy Outreach) 및 OAE(Office of Astronomy for Education)과 협력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교육대중화 코디네이터(National Outreach Coordinators, 이하 NOC)를 둘 수 있다. NOC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IAU 총회의 개최 주기에 맞추어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내부 규정) 위원회 세칙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정이나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세칙 개폐) 이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세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21년 0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세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학술위원회 운영 세칙

2012년 10월 17일 제정

2014년 08월 21일 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위원회 및 분과 규정 제11조에 따라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08.21.>

제2조 (위원장과 총무의 역할) ① 위원장은 위원들을 회장에게 추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4.08.21.>

1.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주재 등 제반 업무 총괄
2. 위원회 총무 선임
3. 학회 정기총회에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

② 총무는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회의록을 기록한다.<개정 '14.08.21.>

제3조 (업무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봄.가을 정기 학술대회의 초청연사 추천 및 선정, 초록 심사, 프로그램 결정 등 학술대회의 과학 활동에 관련된 사항
2. 비정기 학술대회의 기획과 운영
3. 기타 회장이 위임한 학술관련 업무

제4조 (내부 규정) 위원회 세칙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정이나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4.08.21.>

제5조 (세칙 개폐) 이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14.08.2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2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우주관측위원회 운영 세칙

2014년 08월 21일 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위원회 및 분과규정 제11조에 따라 우주관측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총무 1인을 둘 수 있다.

제3조 (임무) ① 위원회는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고층대기 및 우주공간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회 또는 총회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 해야 한다.

제4조 (운영)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에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고 활동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내부 규정) 위원회 세칙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정이나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세칙 개폐) 이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세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규정개정위원회 운영 세칙

2014년 08월 21일 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위원회 및 분과 규정 제11조에 따라 규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총무 1인을 둘 수 있다.

제3조 (임무) 위원회는 학회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회의 정관, 제반 규정 및 세칙에 관한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운영) ① 위원회는 개정안의 이사회 승인 또는 총회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그 후속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활동한다.

② 추후 정관, 규정, 세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장은 위원회를 다시 구성 할 수 있다. 단, 타 위원회 세칙과 분과 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는 규정개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내부 규정) 위원회 세칙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정이나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세칙 개폐) 이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2014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세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한국천문학회 발전위원회 세칙

2019년 4월 10일 제정
2019년 9월 19일 개정
2021년 10월 14일 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위원회 및 분과 규정 제11조에 따라 한국천문학회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위원회는 학회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학회 재정의 확충에 도움이 되는 활동의 발굴 및 실행
2. 천문학의 저변 확대와 지식 보급을 위한 각종 활동의 발굴 및 실행
3. 기타 학회의 발전을 위한 활동

제3조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학회 발전에 관심이 있는 학회 회원 또는 일반인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부회장 중 1인과 3인의 이사를 포함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호선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직무 대행자를 선출하며 필요시 회장이 직무 대행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5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개시연도 1월 1일부터 임기 종료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위원은 본인의 원에 의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장은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 ① 정기회의는 매년 봄 학술대회 이전, 봄 학술대회 이후, 가을 학술대회 이후에 개최하며, 회의 개최 6일 전까지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임시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들의 확인을 받은 후 보관한다.
- ④ 학회의 회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에 따른 소정의 자문료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계) 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로 한다.

제8조(기타 사항)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9조(세칙 개폐) 본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회의 승인을 받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세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태양우주환경분과 운영 세칙

1999년 04월 09일 제정
 2014년 08월 21일 개정
 2019년 11월 26일 개정
 2021년 10월 14일 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위원회 및 분과 규정 제11조에 따라 태양우주환경분과(이하 “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08.21>

제2조 (활동사항) 이 분과는 태양우주환경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학술 모임개최 및 교류
2. 우주환경 관련기관 간 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
3. 국내 태양우주환경 분야 장래계획 논의
4. 태양우주환경 연구 및 관련기술 진흥에 대한 지원과 건의
5. 기타 분과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분과 회원은 태양우주환경에 관심이 있는 학회 회원으로 한다.<개정 '14.08.21.>

② 분과의 운영을 위해 위원장 1인, 운영위원 10인 이내, 총무 1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단, 분과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3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개정 '14.08.21.' 21.10.14>

③ 위원장은 분과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 및 총무는 위원장이 운영위원 및 총무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 및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14.08.21.' 21.10.14>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분과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선임된 임원의 명단
2. 분과의 운영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분과 활동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주요 결정사항은 위원장이 분과총회에 보고한다.

제6조 (총회소집) 정기총회는 학회 봄 학술대회와 가을 학술대회에 개최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제7조 (재정) 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학회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회원들로부터 학회가 정한 연회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14.08.21.>

제8조 (내부 규정) 분과 세칙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정이나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4.08.21.>

제9조 (세칙 개폐) 이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14.08.2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우주전파분과 운영 세칙

1999년 04월 09일 제정
2007년 04월 13일 개정
2014년 08월 21일 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위원회 및 분과 규정 제11조에 따라 우주전파분과(이하 “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08.21.>

제2조 (활동사항) 이 분과는 전파천문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학술 모임개최 및 교류
2. 전파천문 관련기관 간 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
3. 국내 전파천문 분야의 장래계획 논의
4. 전파천문 주파수대역 보호
5. 전파천문 연구 및 관련기술 진흥에 대한 지원과 건의
6. 기타 분과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분과 회원은 전파천문에 관심이 있는 학회 회원으로 한다.<개정 '07.04.13.>

② 위원장은 분과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 및 총무는 위원장이 위촉하고 운영 등의 자문을 위하여 1~2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개정 '07.04.13., '14.08.21.>

③ 분과의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 총무 1인, 운영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07.04.13., '14.08.21.>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분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선임된 임원의 명단
2. 분과위원회의 운영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분과 활동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고 주요 결정사항은 위원장이 분과총회에 보고한다.

제6조 (총회소집) 정기총회는 학회 봄 학술대회와 가을 학술대회에 개최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제7조 (재정)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학회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회원들로부터 학회가 정한 연회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14.08.21.>

제8조 (내부 규정) 분과 세칙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정이나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4.08.21.>

제9조 (세칙 개폐) 이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14.08.2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0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광학천문분과 운영 세칙

2003년 10월 01일 제정

2014년 08월 21일 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위원회 및 분과 규정 제11조에 따라 광학천문분과(이하 “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08.21.>

제2조 (활동사항) 이 분과는 광학천문(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학술 모임개최 및 교류
2. 광학천문 관련기관 간 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
3. 국내 광학천문 발전계획 논의
4. 밤하늘의 보호 및 광공해 대책
5. 광학천문 연구 및 관련기술 진흥에 대한 지원과 건의
6. 기타 분과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분과 회원은 광학천문에 관심이 있는 학회 회원으로 한다.<개정 '14.08.21.>

② 분과의 운영을 위해 위원장 1인, 10인 내외의 운영위원, 총무 1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단, 분과의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2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개정 '14.08.21.>

③ 위원장은 분과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 및 총무는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4.08.21.>

④ 분과 활동의 필요에 따라 상설위원회나 한시적인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들의 설립과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분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임된 임원의 명단
2. 분과의 운영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분과 활동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주요 결정사항은 위원장이 분과총회에 보고한다.

제6조 (총회소집) 정기총회는 학회 봄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거나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의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집한다.

제7조 (재정) 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학회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회원들로부터 학회가 정한 연회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14.08.21.>

제8조 (내부 규정) 분과 세칙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정이나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4.08.21.>

제9조 (세칙 개폐) 이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14.08.2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03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행성계과학분과 운영 세칙

2006년 10월 13일 제정

2014년 08월 21일 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위원회 및 분과 규정 제11조에 따라 행성계과학분과(이하 “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08.21.>

제2조 (활동사항) 이 분과는 행성계과학 분야의 연구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같은 활동을 한다.

1. 행성계과학 관련 학술회의 개최 및 출판물 간행
2. 행성계과학 관련 학술 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3. 행성계과학 관련 연구자의 협력 및 공동 연구 추진
4. 행성계과학 연구 및 관련 기술의 진흥에 관한 논의
5. 기타 분과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분과의 구성원(이하 “회원”)은 행성계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회 회원 중 이 분과에 가입한 자로 한다.

② 분과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 중 1인의 위원장, 5인 내외의 평의원, 3인의 총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단, 분과의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1인 또는 2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개정 '14.08.21.>

③ 총무단은 회무총무, 학술총무, 편집총무로 구성한다.<개정 '14.08.21.>

④ 위원장과 평의원은 분과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총무단은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4.08.21.>

⑤ 분과 활동의 필요에 따라 상설 위원회나 한시적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들의 설치와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14.08.21.>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분과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운영위원 및 고문의 명단
2. 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 분과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분과 활동 사항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위원장은 주요 결정 사항을 분과총회에 보고한다.

제6조 (총회소집) 정기총회는 학회 봄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 (재정) 학회로부터 분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으며, 회원들로부터 학회가 정한 연회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14.08.21.>

제8조 (내부 규정) 분과 세칙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정이나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4.08.21.>

제9조 (세칙 개폐) 이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14.08.2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0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젊은 천문학자 모임 운영 세칙

2014년 08월 21일 제정

2018년 04월 12일 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위원회 및 분과 규정 제11조에 따라 젊은 천문학자 모임(이하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문명칭) 모임의 영문 명칭은 ‘Young Astronomers Meeting’으로 하며, 줄여서 ‘YAM’으로 한다.

제3조 (활동사항) ① 이 모임은 천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 등 젊은 학자들의 학술 교류 및 친목을 도모한다.

② 외국의 유사 모임과의 교류 시 한국을 대표한다.

제4조 (구성) ① 이 모임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이루어지며,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국내 기관 소속인 천문·우주과학 및 관련 전공의 대학원생과 박사 후 연구원 등 젊은 학자들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었으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혹은 천문·우주과학을 전공하는 학부과정 대학생이 총회 등의 모임에 참가한 자.

② 이 모임의 운영을 위해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학술기획부장 1인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또 모임의 학술활동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은 정기모임에서 정회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년도 선거에서는 후보추천에서 제외한다. 총무, 학술기획부장 및 운영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학술기획부장의 경우 차년도 선거에서는 후보추천에서 제외한다. 운영위원은 이 모임의 정회원이 있는 학교 및 기관의 정회원을 대표하는 자를 지칭한다.

④ 이 모임의 활동에 필요한 상설위원회나 한시적인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들의 설립과 폐지 및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 (회장) ① 회장은 이 모임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임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임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임된 임원의 명단
2. 모임의 운영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제3조의 모임 활동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주요 결정사항은 회장이 모임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 (총회소집) ① 회장 선출, 연례행사 및 기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 총회는 학회의 봄 학술대회나 가을 학술대회 기간 중에 최소 연 1회 소집한다.

②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학회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회원들로부터 학회가 정한 연회비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내부 규정) 모임의 세칙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정이나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세칙 개폐) 이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세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한림회 운영 세칙

2018년 4월 12일 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의 위원회 및 분과 규정 제11조에 따라 한국천문학회 산하 한림회(이하 “한림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문명칭) 모임의 영문 명칭은 ‘Astronomy Amity Association’으로 하고, 줄여서 ‘AAA’로 한다.

제3조 (활동 또는 사업) 한림회는 회원의 친목과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한국천문학의 발전과 위상을 제고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한국천문연구원과 과학관 및 사립천문대의 발전에 관한 건의와 자문
3. 천문지식의 보급을 위한 대중화 사업
4. 천문학 보급을 위한 발간 사업
5. 기타 한림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구성) ① 한림회의 회원은 천문학 분야에서 오랜 경륜과 지식 및 전문성을 갖추고 천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 한국천문학회 학회장을 역임한 자, 천문학계에 공이 크고 천문학분야에서 종사한 후 정년퇴임한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한림회의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② 한림회의 운영을 위해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을 둔다.

③ 회장은 한림회의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부회장 1인 및 총무 1인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회장) ① 회장은 다음사항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임된 임원의 명단
2. 한림회의 운영사항

제6조 (총회소집)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학회 학술대회 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7조 (재정) 한림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학회에서 보조 받을 수 있으며, 한림회의 회원들로부터 한림회의 총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천문관측기기분과 운영 세칙

2019년 4월 10일 제정

2021년 10월 14일 개정

제1조 (목적) 한국천문학회(이하 "학회") 위원회 및 분과 규정 제11조에 따라 천문관측기기분과(이하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동사항) 이 분과는 천문관측기기 관련 연구 활동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 ①매년 1회의 Astronomical Instrumentation Workshop 정기 모임을 통해서 한국 내의 천문우주기기를 개발하고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소통과 화합 지속 활동 (한국우주과학회와 협력하여 개최)
- ②천문관측기기를 설계, 제작, 시험, 운영하기 위해서 광학, 광기계, 기계, 전자, 제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시스템 운영 관리, 데이터 처리 등 다양한 업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연구 교류 활동
- ③천문학 관련 천문관측기기 전공 연구자들의 적극적 학회 참여와 역할 증대를 위한 활동
- ④천문관측기기 분야의 지속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학생 참여의 장 마련 및 지원 활동
- ⑤천문관측기기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천문관측기기 관련 대형 프로젝트 제안을 위한 발판 마련기타 본 분과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분과의 회원은 천문관측기기 관련 연구 활동 증대에 관심을 갖는 학회 회원 중 이 분과에 가입한 자로 한다.
②분과의 운영을 위해 위원장 1인, 5인 내외의 운영위원, 총무 1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단, 분과의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2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③위원장은 분과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 및 총무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위원장 후보 추천은 총회 공지 시점 이후 및 총회 기간에 회원으로부터 추천 받을 수 있다. 단 후보군이 없거나 일반 회원 규정에 의거 적합하지 않은 후보만 추천된 경우, 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1.10.14.>
- ⑤분과 활동의 필요에 따라 상설위원회나 한시적인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들의 설립과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분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선임된 임원의 명단
2. 분과의 운영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분과 활동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주요 결정사항은 위원장이 분과총회에 보고한다.

제6조 (총회소집) 정기총회는 학회 봄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거나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집한다.

제7조 (재정) 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학회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회원들로부터 학회가 정한 연회비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내부 규정) 분과 세칙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정이나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세칙 개폐) 이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천문학회 부설 소남 천문학사 연구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천문학회(이하 "천문학회"라 한다)의 정관 제33조와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설치된 '소남 천문학사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임무) 소남 천문학사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한문 명칭은 '召南 天文學史 研究所', 영문명칭은 SohNam Institute for History of Astronomy (SIHA)로 한다. 연구소는 천문학사와 고천문학 연구와 보급, 그리고 후진양성을 그 임무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① 천문학사와 고천문학에 대한 자료 조사와 연구
- ② 천문학사와 고천문학 관련 강연과 출판물 제작
- ③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주소) 본 연구소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875-7 허버드오피스텔 409호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입회) 연구소의 회원은 천문학사 및 고천문학 연구 및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임원 1인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한다.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연구원 : 연구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연구소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 한다.
- ② 일반회원 : 연구소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람 및 단체로 한다.
- ③ 특별회원 :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공로가 큰 사람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연구소 시설을 이용하고, 학술연구.세미나.학술대회 등 연구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종 간행물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 ① 본 연구소의 운영규정 및 제 규약의 준수
- ② 회비와 기여금 등 제 부담금의 납부
- ③ 기타 운영 규정에 규정된 사항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연구소 회원을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탈퇴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시한 날을 탈퇴일로 한다.

제9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연구소의 사업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연구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연구소장 1인
 2. 운영위원 6인 이상 12인 이하. 운영위원 중에 총무위원 등 실무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 ①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천문학회장이 임명한다.
-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실무담당위원은 연구소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연구소의 운영규정 및 내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단,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천문학회장이 해임한다.

제14조 (연구소장의 직무)

-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연구소장이 유고시에는 총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5조 (구성)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연구소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이 아닌 회원이 배석할 수 있다.

제16조 (구분 및 소집)

- ① 운영위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특별회의로 구분하며 연구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회의는 일 년에 두 번으로 하며, 6월과 12월에 개최한다.
- ③ 특별회의는 소장 또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운영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의결사항) 운영위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회원과 임원에 관한 사항
- ② 주요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④ 운영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 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운영위의 의장이 본 연구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회비, 기여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자체적으로 충당한다.

제20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천문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2조 (서류의 보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성한 서류 및 기타 일체의 회계상부는 연구소 사무실에 보관한다.

제 6 장 보 칙

제23조 (규정변경)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해산)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하거나, 독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잔여재산의 귀속) 연구소가 해산 또는 독립할 때에는 연구소 운영위원회가 마련한 잔여재산의 처리방안을 천문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거나, 천문학회의 정관과 규정을 따르거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운영위원회 초대 위원들은 천문학회 부설기관으로 편입되기 전의 기존 연구소 이사회의 이사들로 한다. 2007년 4월 12일 현재 소남연구소의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분 류	이 름	소속 및 직위
소 장	윤홍식	서울대 천문학과 명예교수
이 사	문중양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박창범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교수 (총무이사)
	유성초	충북대 물리학과 교수
	이면우	춘천 교대 교수
	이용복	서울 교대 과학교육과 교수
	이용삼	충북대 천문우주학과 교수
	이종각	
	전용훈	소남연구소 전문연구원
	홍승수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제3조 본 규정은 한국천문학회 부설기관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천문학회

제60차 정기 총회

한국천문학회 제60차 정기총회

일시 : 2022년 10월 13일(목) 17:00 ~ 18:30

장소 : 라한 셀렉트 경주

1. 개회 선언 학회장 박명구
2. 회무 보고 총무이사 양홍진
4. 재무 보고 재무이사 이수창
5. 감사 보고 감사 강용희, 이상각
6. 분과 및 위원회보고 각 위원장
7. 심의안건 1. 규정 개정 승인 학회장 박명구
8. 심의안건 2. 2023년 예산안 승인 학회장 박명구
9. 심의안건 3. 신임 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수중
10. 보고안건 4. 위원회 및 분과 세칙 제정 보고 학회장 박명구
11. 기타 토의 사항 학회장 박명구
12. 폐회 선언 학회장 박명구

회 무 보 고

1. 이사회 개최 및 주요의결, 논의사항

(1) 2022년도 제1차 이사회

- 가) 일시 : 2022년 2월 23일 14:00
- 나) 장소 : Zoom
- 다) 주요 의결, 논의사항
 - 신입회원인준 : 정회원, 준회원 - 9명
 - 규정 개정 : 교육회원 회비 5만원결정
 - 회원명부 공개 여부 결정
 - 가을학술대회 개최 장소 결정 : 라한 경주
 - JKAS 논문 투고수 증진 안
 - 선거관리위원회구성 :
 - 위원장 - 박수종
 - 위 원 - 박찬, 심현진, 이상성, 양홍진

(2) 2022년도 제2차 이사회

- 가) 일시 : 2022년 4월 8일 16:00
- 나) 장소 : zoom
- 다) 주요 의결, 논의사항
 - 신입회원인준 : 정회원, 준회원 - 18명
 - 공익법인 금융수익사업 여부
 - 2022년 신입임원 임명장 및 위촉장 배포
 - EDI 위원회 개설제안
 - 홈페이지 개선 현황보고
 - IAUGA2022 현황보고

(3)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 가) 일시 : 2022년 9월 16일 14:00
- 나) 장소 : zoom
- 다) 주요 의결, 논의사항
 - 신입회원인준 : 정회원, 준회원 - 26명
 - 2023년 예산안
 - 2023년 신임이사 후보 결정
 - 윤홍식 학술상 제정 논의
 - 봄학술대회 일정 : 2박3일 운영
 - 다양성위원회 설치 승인

(4) 2022년도 제4차 이사회 예정

- 가) 일시 : 2022년 10월 12일 18:20
- 나) 장소 : 라한셀렉트 경주
- 다) 주요 의결, 논의사항
 - 위원회 및 분과 규정 개정
 -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2. 학술대회 개최

(1) 2022 한국천문학회 봄 학술대회 개최

- 가) 일시: 2022년 4월13일(수) ~ 4월15일(금)
- 나) 장소: 부산 BEXCO
- 다) 참석: 269명
- 라) 발표논문: 125편

(2) 2022 한국천문학회 가을학술대회 및 제60차 정기총회

- 가) 일시: 2022년 10월12일(수) ~ 10월14일(금)
- 나) 장소: 라한셀렉트 경주
- 다) 참석: 350명(추정)
- 라) 발표논문: 125편

3. 학술지 및 정기간행물 발간

- (1) JKAS, Vol 55, No. 1, 2, 3, 4호 발간
- (2) PKAS, Vol 37, No. 1, 2호 발간
- (3) 천문학회보, 제47권 1호 발간

결 산 보 고 서

(2022. 1 .1~ 2022. 09.20)

수 입	지 출
회비 28,130,032	공과금 4,230,000
연회비 27,980,318	국내 4,230,000
가입비 149,714	IAU회비 -
지원금 3,522,225	학회지발간인쇄비 1,038,400
고유목적사업지원금 -	JKAS -
학회기부금 3,000,000	PKAS 1,038,400
학술지 인세 522,225	천문학회보 -
학회지구독료 50,000	학술대회 34,494,380
국내 50,000	준계 34,494,380
논문게재료 7,708,959	추계 -
JKAS 6,398,959	인건비 44,503,330
PKAS 1,310,000	사무원 35,856,410
학술대회 73,066,642	퇴직적립금 2,210,440
준계(등록비) 48,640,483	JKAS편집간사 4,377,600
추계(등록및찬반비) 24,426,159	PKAS 편집간사 2,058,880
용역사업 74,119,000	수용비 및 관리비 9,854,381
Naver백과사전2차사업 74,119,000	유지 및 관리비 9,241,931
홍보 및 광고료 8,800,000	우편비 612,450
기업광고 -	출장비 및 회의비 3,409,500
연구홍보 8,800,000	용역사업 및 지원금 91,550,890
기타 2,562,702	Naver백과사전2차사업 58,850,590 <small>(21년도 이월금 7,067,552원)</small>
회계이자 및 이자환급 662,702	남북한천문협력용역 21,817,500 <small>(21년도 이월금 23,715,100원)</small>
기업 상금후원 900,000	과학백서 원고료 729,600 <small>(19년도 이월금 10,824,200원)</small>
특별회계 이자-상금 1,000,000	IAUGA2022-KAS홍보 10,153,200
전기이월 111,321,886	포상 900,000
	기업후원 900,000
	학회포상
합 계 309,281,446	9월 20일 학회잔액 119,300,565
	합 계 309,281,446

특별회계

(*정기예금만기입)

수 입	지 출
유경노 기부금 - 소남학술상 29,231,437	유경노 기부금 - 소남학술상 29,231,437
전기이월 28,782,431	잔액 27,231,437
정기예금이자 449,006 (이자1.56%)	일반회계전용(상금) 2,000,000 *(22. 12. 02)
정기예금 84,676,599	정기예금 84,676,599
전기이월 83,073,285	잔액 84,676,599
정기예금이자 1,603,314 (이자1.93%)	*(23. 03. 30)
민영기 기부금-학술상 80,000,000	민영기 기부금-학술상 80,000,000
전기이월 80,000,000	잔액 80,000,000
정기예금이자 1,248,000 (이자1.56%)	일반회계전용(상금) 1,248,000 *(22. 12. 02)
윤홍식 기부금 - 소남연구소운영 50,000,000	윤홍식 기부금 - 소남연구소운영 50,000,000
전기이월 50,000,000	잔액 50,000,000
정기예금이자 965,000 (이자1.93%)	학회기금2로이체 341,196 *(23. 03. 30)
메타스페이스 후원금 - 젊은천문학자상 34,684,477	메타스페이스 후원금 - 젊은천문학자상 34,684,477
전기이월 34,027,742	잔액 33,684,477
정기예금이자 656,735 (이자1.93%)	일반회계전용(상금) 1,000,000 *(23. 03. 30)
기금1-학회운영 52,892,228	기금1-학회운영 52,892,228
전기이월 52,079,783	잔액 52,892,228
정기예금이자 812,445 (이자1.56%)	*(22. 12. 02)
기금2-소남연구소 4,041,044	기금2-소남연구소 4,041,044
전기이월 3,697,936	잔액 4,041,044
윤홍식 기부금이자 341,196	(자유예금통장)
이자 1,912	
기금3-해외천문교육지원 2,844,919	기금3-해외천문교육지원 2,844,919
전기이월 2,842,795	잔액 2,840,519
이자 2,124	지출 4,400
신규 후원 -	(자유예금통장)
IAUGA 후원금 32,959,820	IAUGA 후원금 32,959,820
전기이월 32,945,903	잔액 27,839,800
이자 13,917	지출 5,120,020
신규 후원 -	(자유예금통장)
학회발전기금 21,044,826	학회발전기금 21,044,826
전기이월 21,035,937	잔액 21,044,826
이자 8,889	(자유예금통장)
신규 후원 -	
합 계 392,375,350	합 계 392,375,350

결산보고서

(2022. 1. 1 ~ 2022. 09. 20)

수 입		지 출	
회비	28,130,032	공과금	4,230,000
연회비	27,980,318	국내	4,230,000
가입비	149,714	IAU회비	-
지원금	3,522,225	학회지발간인쇄비	1,038,400
고유목적사업지원금	-	JKAS	-
학회기부금	3,000,000	PKAS	1,038,400
학술지 인세	522,225	천문학회보	-
학회지구등록료	50,000	학술대회	34,494,380
국내	50,000	준계	34,494,380
논문게재료	7,708,959	추계	-
JKAS	6,398,959	인건비	44,503,330
PKAS	1,310,000	사무원	35,856,410
학술대회	73,066,642	퇴직적립금	2,210,440
준계(등록비)	48,640,483	JKAS편집간사	4,377,600
추계(등록및만찬비)	24,426,159	PKAS 편집간사	2,058,880
용역사업	74,119,000	수용비 및 관리비	9,854,381
Naver백과사전2차사업	74,119,000	유지 및 관리비	9,241,931
홍보 및 광고료	8,800,000	우편비	612,450
기업광고	-	출장비 및 회의비	3,409,500
연구홍보	8,800,000	용역사업 및 지원금	91,550,890
기타	2,562,702	Naver백과사전2차사업	58,850,590
회계이자 및 이자환급	662,702	남북한천문협력용역	21,817,500
기업 상금후원	900,000	과학백서 원고료	729,600
특별회계 이자-상금	1,000,000	IAUGA2022-KAS홍보	10,153,200
전기이월	111,321,886	포상	900,000
합계	309,281,446	기업후원	900,000
		학회포상	
		9월 20일 학회잔액	119,300,565
		합계	309,281,446





月
DA1

특별회계

(*:정기예금만기일)

수 입		지 출	
유경노 기부금 - 소남학술상 29,231,437		유경노 기부금 - 소남학술상 29,231,437	
전기이월	28,782,431	잔액	27,231,437
정기예금이자	449,006 (이자1.56%)	일반회계전용(상금)	2,000,000 *(2022. 12. 02)
정기예금 84,676,599		정기예금 84,676,599	
전기이월	83,073,285	잔액	84,676,599
정기예금이자	1,603,314 (이자1.93%)		*(2023. 03. 30)
민영기 기부금-학술상 80,000,000		민영기 기부금-학술상 80,000,000	
전기이월	80,000,000	잔액	80,000,000
정기예금이자	1,248,000 (이자1.56%)	일반회계전용(상금)	1,248,000 *(2022. 12. 02)
윤홍식 기부금-소남연구소운영 50,000,000		윤홍식 기부금-소남연구소운영 50,000,000	
전기이월	50,000,000	잔액	50,000,000
정기예금이자	965,000 (이자1.93%)	학회기금2로이체	341,196 *(2023. 03. 30)
메타스페이스 후원금 - 젊은천문학자상 34,684,477		메타스페이스 후원금 - 젊은천문학자상 34,684,477	
전기이월	34,027,742	잔액	33,684,477
정기예금이자	656,735 (이자1.93%)	일반회계전용(상금)	1,000,000 *(2023. 03. 30)
기금1-학회운영 52,892,228		기금1-학회운영 52,892,228	
전기이월	52,079,783	잔액	52,892,228
정기예금이자	812,445 (이자1.56%)		*(2022. 12. 02)
기금2-소남연구소 4,041,044		기금2-소남연구소 4,041,044	
전기이월	3,697,936	잔액	4,041,044
윤홍식 기부금이자	341,196		(자유예금통장)
이자	1,912		
기금3-해외천문교육지원 2,844,919		기금3-해외천문교육지원 2,844,919	
전기이월	2,842,795	잔액	2,840,519
이자	2,124	지출	4,400
신규 후원	-		(자유예금통장)
IAUGA 후원금 32,959,820		IAUGA 후원금 32,959,820	
전기이월	32,945,903	잔액	27,839,800
이자	13,917	지출	5,120,020
신규 후원	-		(자유예금통장)
학회발전기금 21,044,826		학회발전기금 21,044,826	
전기이월	21,035,937	잔액	21,044,826
이자	8,889		(자유예금통장)
신규 후원	-		
합계	392,375,350	합계	392,375,350





月
DA

감 사 보 고 서

1. 한국천문학회 2022년 1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회계 감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 IAUGA2022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천문학 위상이 한층 도약하고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Covid-19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2022년 봄 학회는 대면으로 부산 BEXCO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천문학회 회계업무의 수입과 지출이 제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4. 2022년 남은 기간과 2023년에도 보다 다양한 학술활동이 이루어지고 대외봉사활동 또한 활발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감 사 강 용 희
 이 상 각





月
DA

결산보고서

(2021. 1. 1 ~ 2021. 12. 31)

수 입		지 출	
회비	32,821,668	공과금	23,709,336
연회비	32,681,811	국내	6,230,000
가입비	139,857	IAU회비	17,479,336
<hr/>		<hr/>	
지원금	13,920,000	학회지발간인쇄비	9,611,500
고유목적사업지원금	9,920,000 학술대회	JKAS	3,920,000
저작권료(누리미디어)	1,000,000	PKAS	1,966,800
Naver백과사전2차사업정산	-	천문학회보	3,724,700
기타	3,000,000	<hr/>	
학회지구독료	257,652	학술대회	37,267,885
국내	50,000	총계	4,876,129
국외	207,652	추계	32,391,756
논문게재료	18,239,302	<hr/>	
JKAS	14,789,302	인건비	67,591,130
PKAS	3,450,000	사무원	51,095,070
학술대회	94,246,967	퇴직적립금	3,172,860
총계(등록비)	41,057,285	JKAS편집간사	9,283,200
추계(등록및만찬비)	53,189,682	PKAS 편집간사	4,040,000
용역사업	81,067,252	<hr/>	
Naver백과사전2차사업	50,000,000	수용비 및 관리비	6,963,337
IASS2021	2,387,252	유지 및 관리비	5,861,567
남북한천문협력용역	28,680,000	우편비	207,870
홍보 및 광고료	11,500,000	출장비 및 회의비	893,900
기업광고	700,000	<hr/>	
연구홍보	10,800,000	용역사업 및 지원금	56,628,100
기타	6,467,199	Naver백과사전2차사업	50,000,000
회계이자 및 이자환급	1,097,465	IASS2021	1,663,200
기업 상금후원	1,800,000	남북한천문협력용역	4,964,900
특별회계 이자-상금	3,569,734	IAUGA2021 조직위	-
전기이월	63,873,134	과학백서 원고료	(2019년도 잔액 10,824,200원)
<hr/>		포상	9,300,000
합계	322,393,174	기업후원	1,800,000
		특별회계 기부금이자	3,569,734
		학회포상	3,930,266
		12월 31일 학회잔액	111,321,886
		합계	322,393,174





月
DA

특별회계

(※정기예금만기일)

수 입		지 출	
유경노 기부금	29,231,437	유경노 기부금	29,231,437
- 소남학술상		- 소남학술상	
전기이월	28,782,431	잔액	27,231,437
정기예금이자	449,006 (이자1.56%)	일반회계전용(상금)	2,000,000 *(2022. 12. 02)
정기예금	83,170,341	정기예금	83,170,341
전기이월	82,510,259	잔액	83,170,341
정기예금이자	660,082 (이자0.80%)		*(2022. 03. 26)
민영기 기부금-학술상	80,000,000	민영기 기부금-학술상	80,000,000
전기이월	80,000,000	잔액	80,000,000
정기예금이자	1,248,000 (이자1.56%)	일반회계전용(상금)	1,248,000 *(2022. 12. 02)
윤홍식 기부금-소남연구소운영	50,000,000	윤홍식 기부금-소남연구소운영	50,000,000
전기이월	50,000,000	잔액	50,000,000
정기예금이자	400,000 (이자0.80%)	학회기금2로이체	569,491 *(2022. 03. 26)
메타스페이스 후원금	35,068,656	메타스페이스 후원금	35,068,656
- 젊은천문학자상		- 젊은천문학자상	
전기이월	34,790,333	잔액	34,068,656
정기예금이자	278,323 (이자0.80%)	일반회계전용(상금)	1,000,000 *(2022. 03. 26)
기금1-학회운영	52,892,228	기금1-학회운영	52,892,228
전기이월	52,079,783	잔액	52,892,228
정기예금이자	812,445 (이자1.56%)		*(2022. 12. 02)
기금2-소남연구소	3,697,936	기금2-소남연구소	3,697,936
전기이월	3,124,927	잔액	3,697,936
윤홍식 기부금이자	569,491		(자유예금통장)
이자	3,518		
기금3-해외천문교육지원	2,852,195	기금3-해외천문교육지원	2,852,195
전기이월	2,849,360	잔액	2,842,795
이자	2,835	지출	9,400
신규 후원	-		(자유예금통장)
IAUGA 후원금	32,945,903	IAUGA 후원금	32,945,903
전기이월	32,918,090	잔액	32,945,903
이자	27,813		(자유예금통장)
신규 후원	-		
학회발전기금	21,035,937	학회발전기금	21,035,937
전기이월	21,018,173	잔액	21,035,937
이자	17,764		(자유예금통장)
신규 후원	-		
합계	390,894,632	합계	390,894,632



月
DATE

감 사 보 고 서

1. 한국천문학회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Covid-19 사태로 2021년 봄 학회는 비대면, 가을 학회는 비대면을 포함한 대면 학술대회로 제주도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천문학회는 학회 회계업무의 수입과 지출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했습니다.
3. 2022년 8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개최 예정인 IAUGA2022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건의하며, 성공을 기원합니다.
4. 2022년도 한국천문학회는 코비드-19 상황의 극복과 더불어 더욱 활성화적으로 활동해서 한국천문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22년 01월 17일

사) 한국천문학회

감 사

강 용 희



이 상 각



2023 년도 예산(안)			
수 입		지 출	
회비	28,000,000	공과금	24,500,000
지원금	8,500,000	국내	6,500,00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대회지원금)	6,000,000	IAU 회비	18,000,000
회원기부금	2,500,000	학회지발간	11,000,000
		JKAS 인쇄비	500,000
		JKAS 영문교정료+xml 제작비	5,000,000
		PKAS 인쇄비	500,000
		BKAS 인쇄비	5,000,000
논문게재료	12,000,000	학술대회	65,000,000
		봄학술대회	30,000,000
		가을학술대회	35,000,000
학회지구독료	100,000	인건비	65,000,000
학술대회	95,000,000	수용비 및 관리비	8,100,000
봄학술대회	45,000,000	유지 및 관리비	5,600,000
가을학술대회	50,000,000	우편비	500,000
		출장 및 회의비	2,000,000
홍보 및 광고료	20,000,000		
		기타	20,000,000
		포상상금	10,000,000
		특별사업운영	10,000,000
포상상금	6,000,000	홈페이지 유지보수	2,000,000
회계이자 및 이자환급	1,000,000	학회	1,000,000
상금후원	1,000,000	학술지	1,000,000
특별회계 전용	4,000,000		
전기이월금	81,000,000	차기이월금	65,000,000
합 계	260,600,000	합 계	260,600,000
올림피아드	226,000,000	올림피아드	226,000,000

특 별 회 계			
		(*:정기예금만기일)	
수 입		지 출	
유경노 기부금 - 소남학술상	29,231,437	유경노 기부금 - 소남학술상	29,231,437
전기이월	28,782,431	잔액	27,231,437
정기예금이자	449,006 (이자1.56%)	일반회계전용(상금)	2,000,000 *22.12.02
정기예금	84,676,599	정기예금	84,676,599
전기이월	83,073,285	잔액	84,676,599
정기예금이자	1,603,314 (이자1.93%)		*23.03.30
민영기 기부금 - 학술상	80,000,000	민영기 기부금 - 학술상	80,000,000
전기이월	80,000,000	잔액	80,000,000
정기예금이자	1,248,000 (이자1.56%)	일반회계전용(상금)	1,248,000 *22.12.02
윤홍식기부금 - 소남연구소운영	50,000,000	윤홍식 기부금 - 소남연구소운영	50,000,000
전기이월	50,000,000	잔액	50,000,000
정기예금이자	965,000 (이자1.93%)	학회기금2로이체	341,196 *23.03.30
메타스페이스 후원금 - 젊은천문학자상	34,684,477	메타스페이스 후원금 - 젊은천문학자상	34,684,477
전기이월	34,027,742	잔액	33,684,477
정기예금이자	656,735 (이자1.93%)	일반회계전용(상금)	1,000,000 *23.03.30
기금1-학회운영	52,892,228	기금1-학회운영	52,892,228
전기이월	52,079,783	잔액	52,892,228
정기예금이자	812,445 (이자1.56%)		*22.12.02
기금2 - 소남연구소	4,041,044	기금2 - 소남연구소	4,041,044
전기이월	3,697,936	잔액	4,041,044
윤홍식 기부금이자	341,196		(일반예금)
이자	1,912		
기금3 - 해외천문교육지원	2,844,919	기금3 - 해외천문교육지원	2,844,919
전기이월	2,842,795	잔액	2,840,519
이자	2,124	지출	4,400 (일반예금)
신규 후원	-		
IAUGA 후원금	32,959,820	IAUGA 후원금	32,959,820
전기이월	32,945,903	잔액	27,839,800
이자	13,917	지출	5,120,020 (일반예금)
신규 후원	-		
학회발전기금	21,044,826	학회발전기금	21,044,826
전기이월	21,035,937	잔액	21,044,826
이자	8,889	YAM 워크숍 지원금	3,000,000 (일반예금)
신규 후원	-	천문학대중화프로그램지원	7,000,000
합계	392,375,350	합계	392,375,350

위원회보고서

한국천문학회지(JKAS) 편집위원회

<http://jkas.kas.org>

1. 위원회 구성 (굵은 글씨는 22년 신규)

- 편집위원 (14명)

Kyungsuk Cho (KASI)

Kimitake Hayasaki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asateru Ishiguro (Seoul National University)

Myungshin Im (Seoul National University)

Donghui Jeong (Penn State University, USA)

Chunglee Kim (Ewha Womans University)

Hyosun Kim (KASI)

Sungsoo S. Kim (Kyung Hee University,

Editor-in-Chief)

Ho-Gyu Lee (KASI, **Deputy Editor-in-Chief**)

Jeong-Eun Lee (Kyung Hee University)

Jeremy Lim (University of Hong Kong)

Yong-Jae Moon (Kyung Hee University)

Maurice H. P. M. van Putten (Sejong University)

Hyunjin Shi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편집간사

백길호 (경희대학교)

2. 2021년 투고/심사/출판 현황

- 투고 34편, 게재 승인 17편, 심사 중 1편

- 16편 출판

- Impact factor

2021: 2.00

2020: 1.39

2019: 0.73

2018: 1.54

2017: 1.54

2016: 0.72

3. 2022년 변화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기로 함.

- 최소 심사자 수를 1명으로 복귀 (과총 탈퇴로 인해 가능)

4. JKAS 투고 논문 수 및 IF 증진 방안

- 더 빠른 출판을 위해 연속간행으로의 전환

(과총 탈퇴로 인해 가능)

- Electronic-only journal

- 현대적인 조판 형태로의 변경

• 현대적인 title page 스타일

(논문 제목에 대소문자 혼용)

• 현대적이고 더 가독성 있는 서체

• 컬러 도입, 로고 삽입

• 흠잡 구분 없는 running title/author, 쪽 번호

• 더 좁은 상하좌우 마진

• reference에서 논문 제목 제거

5. JKAS 개편 진행 현황

- 22년 1월 JKAS 편집위원회

• 과총 학술지발행지원사업 신청 중단.

• 최소 심사자 수 1명으로 복귀

• 연속 간행으로의 전환

- 22년 2월 천문학회 이사회

• 과총 학술지발행지원사업 신청중단을 승인

• 연속간행으로의 전환 조건부 승인

- 22년 4월 봄 천문학회

• 팜플렛을 통한 JKAS 개편진행현황 홍보

- 22년 5월 천문학회 의견 수렴

• 연속 간행으로의 전환 필요성 설명드리고 학계 의견을 요청 (이메일)

• 의견: 1) 전자출판만 하는 저널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이 있을 가능성

2) 호(issue) 또는 쪽을 항상 1로 지정해서

volume/issue/page 형식을 유지하자.

- 22년 9월 천문학회 이사회

• 천문학회 의견 수렴 결과 보고

• 조판 형태 변경(안) 보고

- 22년 10월 가을 천문학회

• 조판 형태 변경(안) 의견 수렴

- 22년 11~12월 천문학회 이사회

• 조판 형태 변경(안) 결정

- 23년(JKAS 56권)부터 연속간행 및 새 조판형태 적용

위원회보고서

천문학논총(PKAS) 편집위원회

천문학논총(PKAS)은 한국천문학회가 발행하는 천문학과 천체물리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로서 주로-고천문, 천문기기를 포함하여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분야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된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현 PKAS 편집위원회는 2010년 1월 (사)한국천문학회 산하 '편집위원회'가 JKAS와 PKAS의 편집위원회로 이원화 되면서 설치된 상설위원회이다. 현재 편집위원으로는 Thiem Hoang, 김승리, 김태선, 박수종, 심현진, 안경진, 이기원, 조정연, 채종철, 오세현(총무), 이상성(위원장) 회원들이 봉사해 오고 있다. 원고편집인

(manuscript editor)으로는 정해진 회원이 위촉되어 PKAS 논문 편집이 제반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PKAS 편집위원회는 PKAS가 양적, 질적으로 손색이 없는 전문학술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로 PKAS가 지난 2016년에 “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승격되고, 2018년에는 “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어 전문학술지로서의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편집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 2021년에는 재인증 평가를 통해 등재지로서의 자격을 향후 6년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한 보다 나은 단계로의 발전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기에는 역부족임을 보여주는 최근 투고 논문수의 감소 현상은 부정할 수 없는 PKAS의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올해 9월까지 총 4편의 논문이 투고되었고, 37권 1호(4월호)와 37권 2호(8월호)에 총 2편(Erratum 1편 제외)이 게재되었으며, 현재 2편의 논문은 심사 중에 있다. 코로나시대 해들 거듭하며 노력을 경주하는 부분으로서, 편집위에서는 PKAS의 미래를 고민하고 한국천문학회에서의 그 자리를 정의하기 위하여 PKAS의 나가갈 방향을 고민하는 독자 간담회를 준비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연구활동 및 대면회의 등의 제한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여 학계 회원 및 독자, 그리고 학회 운영진 등을 모시고 PKAS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임은 분명해 보인다.

금년은 PKAS가 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서의 지위를 얻은 지 4년이 되는 해이며 연구재단의 학회지 재평가를 받아 얻은 재인증을 통해 2026년까지 등재학술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지난 4년 동안의 회원 여러분의 PKAS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양질의 논문 투고가 계속 이어지고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앞으로 4년 후 우수등재학술지로 평가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지 않으면 그나마 힘들게 얻은 등재학술지로서의 자격마저 박탈될까 염려된다. 부디 PKAS가 한국의 천문학사에 길이 남을 전문학회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보고서

포상위원회

1. 포상위원회 구성

위원장: 이형목(서울대학교)
 위 원: 조경석(한국천문연구원)
 위 원: 여아란(한국천문연구원)

2. 본 학회가 수여하는 각종 상 수상자 선정

2022년 봄 학술대회

- 제28회 에시랩-셋별상 수상자: 김기범회원(경북대)
- 제33회 메타스페이스-우수포스터상 수상자:
 대 상: 장연우 회원(경희대)
 우수상: 황세연 회원(서울시립대)

2022년 가을 학술대회

- 2022년 9월: 가을학술대회에서 시상하는 상의 수상 대상자 선정
 제9회 소남학술상 : 최승연 회원(서울대)
 제12회 학술상 : Thiem Hoang 회원(천문연)
 제22회 젊은 천문학자상 : 최이나회원(서울시립대)
 제9회 한국천문학회지(JKAS) 우수논문상: 정일교회원 (2019, JKAS, 52, 227)
- 제29회 에시랩-셋별상 수상자: 손수연 회원(경북대)
- 공로상 수상자: 김용하, 김유제, 민영철, 윤태석, 한원용(가나다순)
- 2022년 10월: 제34회 메타스페이스-우수포스터상 수상대상자 선정[가을 학술대회에서 선정 예정]

3. 외부단체 포상 후보자 추천 및 수상

- 2022년 4월 21일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수상
 한인우회원 (한국천문연구원)
- 2022년 4월 21일 과학기술진흥유공 과기부장관 표창
 양홍진회원 (한국천문연구원)
- 2022년 4월 11일 기초과학진흥유공 과기부장관 표창
 고종완회원 (한국천문연구원)
- 2022년 4월 제32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김민진 회원 (경북대학교)
 수상논문 : SIMULATIONS OF TORUS REVERBERATION MAPPING EXPERIMENTS WITH SPHEREX
 학술지명 : 한국천문학회지(JKAS)

위원회보고서

학술위원회

1. 학술위원회의 업무

학술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봄, 가을 정기 학술대회의 초청 연사 추천 및 선정, 초록 심사, 프로그램 결정 등 학술대회의 과학 활동에 관련된 사항 관장

- 비정기 학술대회의 기획과 운영
- 기타 회장이 위임한 학술 관련 업무
- 포상위원회 요청에 따라 우수포스터상 추천

2. 현 학술위원회 구성

2022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제6기 학술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김상철(한국천문연구원)
- 총 무: 황호성(서울대학교)
- 위 원: 김민진(경북대학교), 김상혁(한국천문연구원), 김정리(이화여자대학교), 김주한(고등과학원), 김태선(연세대학교), 심채경(한국천문연구원), 여아란(한국천문연구원), 오수연(전남대학교), 이정은(서울대학교), 이재준(한국천문연구원), 정웅섭(한국천문연구원)

3. 2022년 활동상황

(1) 제105차 봄 학술대회

- 시간/장소: 4월 13일(수)-15일(금), 부산 벅스코(BEXCO)

- 프로그램: 초청강연 5개를 포함한 구두 발표 84개, 포스터 발표 36개, 특별 포럼 1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우주탐사 분야 방향성 모색)

(2) 제106차 가을 학술대회

- 시간/장소: 10월 12일(수)-14일(금), 라한 셀렉트 경주

- 프로그램: 학술상, 소남학술상, 젊은천문학자상의 수상강연을 포함한 5개의 초청강연, 그 외 구두 발표 81개, 포스터 발표 39개, K-GMT 사용자미팅 특별세션, 연구자와 함께하는 NRF 기초연구사업 간담회 Luncheon Seminar 있을 예정

위원회보고서

IAUGA2022 조직위원회 및 IAU 운영위원회

1. IAU 소개

국제천문연맹(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IAU)에는 현재 8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2,463명의 개인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73년에 가입했으며 현재 200명의 천문학자가 IAU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한국 대표: 조정연), 2017년부터 분담금 4구좌를 내는 회원국 등급 Category III에 속해 있다.

2. IAUGA2022 조직위원회

- (1) 제 31차 IAU총회 개최 준비를 위하여 2016년 3월

31일 이사회에서 'IAUGA2021 조직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설립하였으며, 그를 위한 운영세칙을 제정하였음.

(2) COVID19 팬더믹으로 총회가 2022년 8월로 연기되어, 조직위원회의 명칭이 IAUGA2022으로 변경되었고, 위원의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됨.

(3) 위원장: 강혜성(부산대학교), 부위원장: 박병곤(한국천문연구원)

- 집행위원회: 박병곤(위원장, 한국천문연구원), 권우진(서울대학교), 김도형(부산대학교), 김정리(이화여자대학교), 이상성(한국천문연구원, e-newspaper 편집장)

- 행사위원회: 김웅태(위원장, 서울대학교), 김성수(경희대학교), 이강환(서울대학교), 이수창(충남대학교), 황정아(한국천문연구원)

- 재정위원회: 김종수(위원장, 한국천문연구원), 김지훈(서울대학교), 심현진(경북대학교), 안덕근(이화여자대학교), 황호성(서울대학교)

- 국제위원회: 조정연(위원장, 충남대학교), 김민진(경북대학교), 양홍진(한국천문연구원), 윤석진(연세대학교), 이정은(경희대학교)

- 홍보위원회: 윤성철(위원장, 서울대학교), 송인옥(한국과학영재학교), 이서구(한국천문연구원), 정애리(연세대학교), 최준영(국립부산과학관)

(4) 강혜성 회원이 2016년부터 한국IAU 운영위원장과 IAUGA2022 조직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었으나, 2021년부터 조정연 회원이 한국IAU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음,

(5) 홈페이지: www.iauga2022.org

3. IAUGA2022 조직위원회 활동 사항

(1) 2020년 1월: ㈜메세 인터내셔널을 대행사로 선정하고 계약 체결.

(2) 2020년 4월: 한국천문연구원(KASI)이 공동주최 기관으로 협약 체결.

(3) IAUGA2022 후원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시, 부산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4) 2022년 1월 1일 등록, 초록접수, KAS grant 신청, IAU grant 신청 개시.

(5) 비대면 참가자를 포함하기 위해서 다음을 채택함.

•포스터 논문은 web-based e-Poster로 변경.

•recorded video를 활용한 e-Talk gallery 옵션을 추가로 채택.

•모든 구두발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하여 녹화 영상(VOD) 제공.

•meeting platform: <https://virtual.iauga2022.org/>

•SLACK networking lounge 개설

4. IAUGA2022 개최 보고

(1) 일정: 2022년 8월 2-11일

(2) 장소: 부산 벅스코(BEXCO)

(3) 등록 인원: 총 1,957명 (82개국):

in-person 1,657명, virtual 300명
 현장 참석 인원: 총 1,200명 중 외국인 참가자 710명, 내국인 참가자 490명

(4) 학술행사: 7 IAU symposia, 10 Focus meetings, 9 Division meetings, Institutional meetings

(5) 발표 논문 (초록 접수): 1,670 건
 (구두 발표 840건, e-Poster/e-Talk 830건)

(6) 예산: 총 수입: 약 25억원

(7) e-newspaper 8회 발행
 편집위원: 이상성(위원장), 권우진, 김도형, 김지훈, 전명원, Sascha Trippe

(8) KAS grant: 총 100명 지원 제공 (등록 및 숙박비) : 학생 71명, 젊은 천문학자 19명, 은퇴학자 10명,

(9) 외국인 참가자의 입국 절차 지원
 •invitation letters for short-term visiting VISA
 •입국 절차: K-ETA or VISA 발급 -> pre-departure

COVID test -> Q-code 발급 -> arrival PCR test (양성 확진되는 경우 7일간 자가격리)

(10) Social Events
 •Welcome Reception (8/2), VIP Reception (8/11)
 •Young Astronomers Lunch (8/5)
 •Women in Astronomy Lunch (8/8)

Conference Dinner (8/9)

(11) 대중 홍보 행사
 •Public Lecture I: Shepard Doeleman, 8월 5일(금), BEXCO Auditorium

•Public Lecture II: Brian Schmidt, 8월 6일(토), BEXCO Auditorium

•“차세대 천문학” 강연: 황호성, 이정은, 전명원, 손상모, 8월 6-7일, 부산과학관

•Public Star Party: 8월 9일, BEXCO, 협찬: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가야별연구소

•교사연수: 8월 5-9일, 한국과학영재학교

(12) 언론보도:

•위원장 인터뷰: YTN science, 부산CBS 라디오, 부산MBC 라디오, 부산교통방송, 부산영어방송, 한국경제, 해럴드경제

•신문 기사 보도: ~200여 건

5. IAU 소식

(1) 개인회원(individual member) 및 주니어 회원(junior member) 가입 절차 안내

•주니어 회원 : 박사 학위 취득 후 3년 미만
 •매년 10월 1일 ~ 12월 15일까지 가입 신청서를 접수, 이듬해 IAU EC에서 승인.

•회원가입을 원하는 회원은 조정연 운영위원장에게 신청 (jcho@cnu.ac.kr).

(2) IAU PhD Prize 접수: 마감일 2022년 12월 15일

•자격: 2021년 12월 16일 - 2022년 12월 15일에 PhD defense를 마친 천문학자

•각 Division 별로 1 명 선정 예정.

•온라인 접수:

https://www.iau.org/science/grants_prizes/phd_prize/

•2021년 수상자는 IAU 홈페이지 공지되었음.

(3) 2024년 33차 총회(Cape Town)에 포함되는 IAU Symposia & Focus meeting 신청

•LOI 마감일 : 2022년 9월 15일

•Full proposal 마감일은 2022년 12월 15일.

•참고 :

<https://www.iau.org/science/meetings/proposals/loi/>

(4) 2022년 한국의 분담금(Category III)은 13,400 유로 예정.

위원회보고서

교육홍보위원회

1. 교육홍보위원회 소개

한국천문학회 교육홍보위원회는 교육과정소위원회, IAU-OAE Node Korea, 국내교육지원단, 해외교육지원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2년은 IAUGA와 연계하여 IAU-OAE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국내교육지원단과 해외교육지원단 사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다시 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천문학 대중화 및 시민천문학 지원사업, 천문학 저역서 소개 등의 일을 하고 있다.

2. 교육홍보위원회 위원

이름	소속	역할
강성주	국립과천과학관	학회 SNS 관리, IAUGA 대중행사
권우진	서울대학교	OAE (NAEC)
손정주	한국교원대학교	OAE Node Korea Manager, 교육과정소위원회
송인옥	과학영재고	OAE-NAEC Manager
심채경	한국천문연구원	천문학 저역서 소개
심현진	경북대학교	OAE Node Korea Deputy Manager
여아란	한국천문연구원	해외교육지원단장, OAE (NAEC)
이강환	IPK/서울대학교	위원장, 천문학 대중화 및 시민천문학 지원사업
이정애	한국천문연구원	OAE-NAEC Deputy Manager, 해외교육지원단 총무
최준영	국립부산과학관	IAUGA 대중행사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국내교육지원단장